#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5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 박대수・지성호・최춘식

엄태영 · 윤창현 · 허은아

이 용・김 웅・윤두현

김형동 · 김성원 · 홍석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 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공무원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공무원에게도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 조제2항 삭제,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보장 및 한계"를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정당한 활동은 보장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조합원의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은 보수의 손실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24조, 제24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u>보장 및</u>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u>보장</u> )
<u>한계</u> )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	
조합과 관련된 <u>정당한 활동에</u>	<u>정당한 활동은 보장된다</u> .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	
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u>&lt;삭 제&gt;</u>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③
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	
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u>
<단서 신설>	만, 제8조에 따른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조
	합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④ (생략)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생략)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 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 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 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 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 60조제1항·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 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 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조의	12에	따라	결?	정된	근호	<u> </u>
<u>간</u> 면	제호	한도를	초	과하>	지 0	<u> </u>
하는	범위여	에서 -	공무-	원은	보수	<u> </u>
손실	없이	국가	와 ス	] 방지	카치딘	<u> </u>
와의	협으	]·교	섭,	고충	·처리	<u> </u>
노동조	<u> -</u> 합의	유지	] • <del></del> {	<u></u> 라리	업두	무를
지원할	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